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4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박정현 · 손명수
이정문 · 강준현 · 최혁진
홍기원 · 복기왕 · 맹성규
이재관 · 김교홍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,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,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정부의 전력망, 데이터센터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의 경우 보안이 핵심사항임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수요 창출 및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·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2 신설).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국산반도체 우선 구매) ① 정부는 전력망,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(이하 “국산반도체”라 한다)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매계약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산반도체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0조의2(국산반도체 우선 구매)</u> ① 정부는 전력망,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(이하 “국산반도체”라 한다)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매계약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국산반도체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